

## 위탁형 펀드들의 재간접형 전환 관련 Q&A

### 1. 해당 투자신탁을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 들어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되었거나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효율적인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해당 투자신탁을 계열회사에서 운용 중인 펀드(이하 "하위펀드"라 합니다)에 투자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되게 되면 향후 비용 절감을 통해 펀드의 운용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당 투자신탁은 현재 해외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반해,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하위펀드가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킵니다. 하위펀드는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해외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 3.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될 하위펀드는 무엇인가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된 후 투자하게 될 하위펀드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운용인 펀드로서 룩셈부르크에 상장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펀드입니다. 하위펀드는 해당 투자신탁의 모두 자신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펀드의 운용전문인력은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되기 전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과 동일합니다. 당사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5년간 하위펀드의 성과는 해당 투자신탁의 성과와 유사합니다.

### 4.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비용은 달라지나요?

해당 투자신탁이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회성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년 펀드가 부담하는 평균적인 수수료 등의 비용도 소폭으로나마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수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5.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 위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투자위험은 하위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한 위험이 추가되며 그 외 투자 위험은 동일합니다.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 위험등급은 전환 후에도 동일합니다.

### 6.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개별 투자자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별 투자자는 계속해서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 분배되는 이익 또는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에는 하위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투자신탁을 가입한 투자자는 계속해서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하위펀드가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은 그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의 변경, 정부 정책 또는 투자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질 수 있으니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동안 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신규 또는 추가 매입하거나 환매할 수 있나요?**

예. 투자자는 계속해서 해당 투자신탁을 신규 또는 추가 매입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8. 해당 투자신탁의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의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당사는 해당 펀드들의 전환시점을 아래의 일자를 효력발생 예정으로 해당 투자신탁을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펀드	효력발생일
JP모간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7년 1월 16일(월)
JP모간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7년 1월 19일(목)
JP모간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요한 변경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증권신고서 변경대비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변경대비표(안)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해당 투자신탁의 명칭이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변경 전 투자신탁 명칭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JP모간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모간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JP모간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모간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JP모간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모간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 해당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주식 등에서 하위펀드로 바뀌게 되며, 해당 투자신탁은 더 이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되어 운용되지 않습니다.
- 3) 재간접형 투자신탁에 맞게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 4) 투자위험은 하위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한 위험이 추가되며 그 외 투자 위험은 동일합니다.

#### 10. 전환으로 인한 기존 고객의 자산가치(가격) 변동 가능성의 위험 고지

당사에서는 기존 투자신탁에서 보유 중인 자산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매도하고 그와 동시에 해당 펀드와 동일/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매입하는 구조로 전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기존 고객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펀드의 전환으로 인해 자산가격에 반영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